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 총정리 제2판 1쇄 정오표

(2024년 11월 18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4년 09월 19일 발행된 “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 총정리(2024년) ”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 총정리 제2판(2024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4년 11월 18일 기준)

2024년 09월 19일 발행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 총정리(제2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사항
p. 6 - 16번	<p>[해설 - 수정]</p> <p>[해설] <위헌결정과 법률조항의 개정>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 [2]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20.2.21. 2015모2204).</p>
p. 15 - 46번	<p>[46번 - 보충]</p> <p>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한다. [24 10모]</p> <p>[해설]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받은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대판 2024.2.8. 2023도9305). [정답] ×</p>
p. 91 - 49번	<p>[해설 - 앞부분 수정]</p> <p>[해설] 지문의 전단은 아래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사건>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1.11.25. 2021도10903).</p>
p. 161 - 26번	<p>[해설 - 수정]</p> <p>[해설]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지문이다.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로는 강도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경고사격한다는 것이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를 들 수 있고, 과실에 의한 긴급피난행위로는 중환자를 병원에 급히 이송하는 도중 과실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들 수 있고, 과실에 의한 피해자승낙은 치료행위 도중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들 수 있으므로 타당한 지문이다.</p>
p. 197 - 24번	<p>[해설 - 수정]</p> <p>[해설] 심신미약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고, 중지미수는 제26조에 따라 필요적 감면이며, 과잉방위와 과잉피난은 제21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의적 감면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며, 불능미수는 제27조에 따라 임의적 감면이며, 중범은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필요적 감경이며, 자수 또는 자복은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면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p>

	<p>[해설 - 보충]</p> <p>[판결이유 중 일부 인용] 위에서 본 원심판단의 논거는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수혈 거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의사의 진료의무에 관한 법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무수혈 방식의 수술 및 그 위험성에 관한 수술 전의 설명 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우, 망인이 타가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수혈 거부에 대한 망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망인의 진지한 의사결정, 수술 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가족 등의 의사 재확인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p>
<p>p. 360 - 272번</p>	<p>[해설 - 수정]</p> <p>[해설] <대항적 행위 유형의 배임죄에서의 공동정범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가 소극적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7.2.8. 2006도483).</p>
<p>p. 385 - 5번</p>	<p>[해설 - 수정]</p> <p>[해설] <범죄단체 구성하고 활동한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대판 2015.9.10. 2015도7081).</p>
<p>p. 385 - 6번</p>	<p>[정답 및 해설 - 수정]</p> <p>[해설]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집단의 조직원의 범죄집단활동죄와 그 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개별적 범행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2.9.7. 2022도6993). [23 2차]</p> <p><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행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범조경합 관계로 목적인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7.10.26. 2017도8600). [23 변시] [정답] ×</p>
<p>p. 485 - 228번</p>	<p>[기존 해설 삭제 - 아래 내용으로 수정]</p> <p>[해설] <아래 229번 해설 참조></p>